

2018학년도 1학기(학사과정 신입생)

등록금 납부안내

KAIST

KAIST 교무처

2018학년도 1학기(학사과정 신입생)
등록금 납부안내

목 차

1. 개관	p.1
2. 세부일정	p.1
3. 등록금 고지/납부확인	p.1
4. 등록금 납부절차	p.2
5. 미납자 조치사항	p.2
6. 납입금 반환	p.2
7. 기타유의사항	p.2
8. 문의사항	p.2
※ 학사과정 신입생 등록금 구성내역	p.3
※ 납입금 반환신청서	p.4

1. 개관

2018학년도 1학기 학사과정 신입생의 등록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. 세부일정

	구 분	기 간	납부시간
1	2018학년도 1학기 학사과정 신입생 등록금 납부	2018. 2. 7(수) ~ 2018. 2. 9(금)	09:00 ~ 18:00
2	2018학년도 1학기 개강	2018. 2. 26(월)	

※ 봄학기 개강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.

3. 등록금 고지/납부 확인

- 1) 고지내역 조회/출력 (2018. 2. 7(수) 09:00부터 가능)
- 2) 고지내역 조회 및 납부방법
 - ① 학사서비스 바로가기 : <https://cais.kaist.ac.kr/payment>
 - ② 로그인 : 학번(수험번호 10자리), 생년월일(예,19960101(8자리)) 입력
 - ③ 하단 "납입금고지서(개인용)" 메뉴 발급 클릭
 - ④ "납입금고지서" 확인 후 각 개별지정계좌로 입금
※ 가상계좌는 한번만 입금할 수 있습니다.
- 3) 납부여부 및 교육비 납입 증명서 조회/발급
 - ① 학사서비스 바로가기 : <http://cais.kaist.ac.kr/payment>
 - ② 로그인 : 학번(수험번호 10자리), 생년월일(예,19960101(8자리)) 입력
 - ③ 하단 납부여부 확인
 - ④ 하단 "교육비납입증명서" 메뉴에서 발급 클릭

4. 등록금 납부절차

- 1) 학사과정
 - 납입금고지서 확인/출력 후 개인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로 무통장입금, 인터넷뱅킹, 텔레뱅킹, CD/ATM기 등을 이용하여 모든 금융기관(전국은행, 농협, 우체국 등)에서 납부
※ 대리인이 납부 시는 개인별 부여된 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납부 가능함.
(수험번호 끝 6자리 + 학생이름(2~3자리) 기재를 권장함.)

5. 미납자 조치사항

등록금 미납자는 KAIST관련규정에 의거 **“입학포기”** 처리됨.

※ 관련근거 : 학칙 제 34조 및 제87조, 납입금 징수규정 제 4조, 입학등록 및 수강신청 절차에 관한 지침 제3조

6. 납입금 반환

- 납입금 납부 후 입학포기로 인하여 납입금 반환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인명의로 통장사본(예금주가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)과 함께 학적팀으로 이메일 혹은 Fax로 제출.(Email: registrar@kaist.ac.kr)
Fax: 042-350-2360) [붙임1 : 납입금 반환신청서]
- 처리소요기간 : 학적팀 제출이후 통상 10일 이내 반환 처리됨

7. 기타 유의사항

- 가. 의료상조회비 : 38,000원 (회비 : 35,000원/학기, 가입비 : 3,000원/입학시 1회)
- 나. 가상계좌는 입금만 가능하며, 출금거래가 되지 않음
- 다. 가상계좌는 등록기간에만 사용되고, 등록기간 이외에는 사용 불가능
(고지된 금액과 납부하는 금액의 불일치 또는 계좌번호 불일치 시 입금 및 이체 불가능)
- 라. 입학 후 휴학시 휴학신청시점에 따라 우선감면한 교육비는 일부 또는 전부 부과됩니다.

8. 문의사항

- 입학금, 수업료 : 042-350-2366 (registrar@kaist.ac.kr)
- 의료상조회비 : 042-350-2177 (llesj@kaist.ac.kr)

2018. 2. 5.

KAIST 교무처장

학사과정 신입생 등록금 구성내역

(단위 : 원, / 학기)

구분	징수기준	장학금	납부액	비고
입학금	353,000	0	353,000	
수업료	3,433,000	3,433,000	0	
의료상조회비	38,000	0	38,000	입회비 : 3,000원 포함
계	3,824,000	0	391,000	

※ 입학 후 휴학시 휴학신청시점에 따라 우선감면한 수업료는 일부 또는 전부 부과될 수 있음.

